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0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문진석·문정복·윤준병

한정애 · 염태영 · 송옥주

윤호중 • 백혜련 • 이재관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 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 설).
-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 (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 다. 가맹지역본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행 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에 있어서 가맹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계약"을 "대행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 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 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 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입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 약"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제41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지역본부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가맹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	7
본부와의 <u>계약</u> 에 의하여 일정	<u>대행계약(이하</u>
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
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	
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②
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	
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u>가맹점사업자단체</u>는 그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 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가맹점사역	<u> </u> 십자단	체 중	제	14조	의
3제1항에	따라	등록	된	가맹	점
사업자단>	<u>स्रो</u>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 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 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등록 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 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가 가입
 -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 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사항
-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신 <u>설></u>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u>제12조의5</u>, 제12조 의6제1항, <u>제14조의2제5항</u>, 제1 못한 경우

-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 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 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 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 부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제33조(시정조치) ① -----

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12</u> 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u>제14</u> 조의2제3항 •
제5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세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
세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 행과 같음)
행과 같음) ②
행과 같음) ② <u>제12</u> 조제 <u>1항</u>
행과 같음) ② <u>제12</u> 조제1항 <u>제1호(제15</u> 조의6에 따라 준용
행과 같음) ② <u>제12조제1항</u> 제1호(제15조의6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
행과 같음) ② <u>제12</u> 조제1항 <u>제1호(제15</u> 조의6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 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
행과 같음) ② <u>제12조제1항</u> 제1호(제15조의6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
행과 같음) ② <u>제12</u> 조제1항 <u>제1호(제15</u> 조의6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 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
행과 같음) ② <u>제12</u> 조제1항 <u>제1호(제15</u> 조의6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 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
행과 같음) ② <u>제12</u> 조제1항 <u>제1호(제15</u> 조의6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 2조의5(제15조의6에 따라 준용

- ③·④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저 (생 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u>2.</u> (생 략) 제4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③・④ (현행과 같음)
세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및 제2
<u>ŏ</u>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
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세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처한다.

1. <u>제12조의5</u>를 위반하여 가맹 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 3. (생략)

③ ~ ⑤ (생 략)

_	_	_	_	_	

1.	제12	조의	5(제]	[5조	의6에	따라
- -	군용도	는	경우	를 표	도함한	다)
-						
-						
-						

- 2.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